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방위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신원식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해서는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종류와 경중 등을 고려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사업계약 이행 지체의 원인이 하도급자에게만 있는 경우 등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기간, 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으로서 방위사업계약과 관련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790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국방조달계약과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등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정부의 정책변경, 주요 원자재 수출국의 국경폐쇄 등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방

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계약 내용과 관련한 시험평가 등을 거친 후에 요청하도록 하고, 방위사업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렴서약서의 내용 구체화(안 제4조제9항)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방위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금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선행연구 및 분석·평가에 관한 정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계약이행의 결과 등으로 도출된 주요 연구성과물에 관한 정보 등을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와 이들 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나. 성능 및 품질 중심의 낙찰자 결정(안 제61조의2 신설)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쟁입찰에서 성능 또는 품질을 종합적으로 또는 우선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찰 전에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성능 또는 품질의 평가기준을 결정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하게 하도록 함.

다. 국내산 원자재 등의 우선 획득(안 제61조의5 신설)

국가안보 확립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산 원자재 등의 우선 획득과 관련된 사항 및 외국산 원자재 등의 사용으로 인한 정보유출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의 사용 방지 대책 등을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의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기준 등(안 제61조의7제6항 및 제7항 신설)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국방조달계약과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거나 국방조달계약과 관련하여 2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국방조달계약과 관련하여 2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착수금 및 중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안 제61조의8 신설)

입찰자가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찰공고 시 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가점 부여 여부 및 그 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함.

바. 지체상금의 감면 기준 등(안 제61조의10 신설)

- 1) 지체상금의 감면 사유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변경, 주요 원자재나 부품 수출국의 국경

폐쇄 등으로 계약 이행이 지체된 경우로 구체화함.

- 2)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해당 지체일에 대해 지체 상금을 전부 감면하고,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지체일에 대해 지체상금의 30퍼센트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사. 계약의 변경 절차 등(안 제61조의11 신설)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계약 내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평가 등을 거친 후에 계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아.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61조의12 신설)

지체상금의 감면 등 방위사업계약의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에 각각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전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안 제70조)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 등의 대표 및 임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한 등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20. ~ 4. 1., 4. 11. ~ 4.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방위사업계약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5호라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복구 또는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조달이 필요한 물품

가. 전시, 사변, 적의 침투나 국지도발(局地挑發)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

다. 재난, 재해, 감염병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

2. 해외파병 관련 업무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조달이 필요한 물품

② 법 제3조제15호마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전력 지원체계 중 장병의 생명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우수한 성능과 품

질이 요구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2조의4(장기계약의 정의) 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계약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경우
2. 장기조달계획, 장기간 예측되는 반복소요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회계연도 내에 종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제61조의12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 등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방부장관이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가. 위원회

나.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정책분과위원회

다. 국방부에 두는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및 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회

2. 방위사업청장이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나. 제15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

다. 방위사업청에 두는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및 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회

제4조제8항(중전의 제7항) 중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이하 “방위사업계약”이라 한다)”을 “국방조달계약”으로,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을 각각 “국방조달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와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방위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소요의 적절성 검증

나. 법 제14조의2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

다. 법 제15조에 따른 소요결정

라. 법 제15조의3에 따른 사전개념연구

다.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바. 법 제23조에 따른 분석·평가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방위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

2.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회 등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가. 위원회

나. 법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다.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및 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회

3.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계약이행의 결과로 도출된 주요 연구성과물에 관한 정보

⑩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입찰·낙찰 또는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계약목적물의 성격

2. 부정행위의 경중

3.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및 기간

4. 계약 이행의 시급성

5. 계약 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제5조제1항 중 “법 제6조제4항”을 “법 제6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

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6조제5항 단서”를 “법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법 제6조제8항”을 “법 제6조제9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6조제6항 본문”을 “법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조제7항”을 “법 제6조제8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5항 단서에 따른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방위사업청장과 소요와 관련된 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이하 “소요군(所要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해야 한다.

1. 방위사업청장: 법 제3조제13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소요군: 법 제3조제13호가목2)

제2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3조제15호라목에 따른 물품

제50조제4항 중 “제60조제1항에 따라 장기계약”을 “장기계약”으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장기계약의 체결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장기계약에 입찰하려는 자가 총제조 또는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부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제조금액 또는 총용역금액으로서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계약금액을 연차별로 배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차별 배분금액”이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이행기간 동안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해당 연도의 예산을 고려하여 매년 연차별 배분금액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연차별 배분금액을 누적하여 부기해야 한다.

④ 장기계약의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5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제3항제1호·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산업체와 방산물자 생산(「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을 말한다)·구매계약[해당 방산업체가 제조하지 않는 법 제3조제13호나목에 따른 수리부속품(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생산·구매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5. 법 제3조제15호라목의 물품과 관련하여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8. 국내 수리원(修理員)이 존재하지 않아 국내정비능력을 개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장비, 구성품 또는 결합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능력을 개발한 국내업체와 장비, 구성품 또는 결합체의 정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6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위사업계약의 구체적 내용, 범위 및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2를 제61조의6으로 하고,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성능 등 중심의 낙찰자 결정)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성능 또는 품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거나 우선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성능 또는 품질에 대한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가 그 평가기준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낙찰자 결정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1조의3(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국외구매를 위한 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제61조의4, 제61조의5 및 제61조의7부터 제61조의9까지에서 같다)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의 세부 기준 및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4(개산계약의 정산 등) ①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개산가격의 결정, 개산계약의 체결 절차 및 정산기준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개산가격의 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견적가격

2. 유사한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원가계산을 통해 계산한 가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산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추가로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정산하는 금액은 입찰공고 당시 해당 사업의 예산과 최초 계약금액 간의 차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경쟁입찰로 체결한 경우

2.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산 시점에 산정한 원가가 정산 시점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이 반영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산계약의 체결기준, 계약금액의 조정 및 개산계약의 세부적인 정산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5(국내산 원자재 등의 우선 획득)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원자재등”이라 한다)이 우선 획득될 수 있도록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 평가항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1. 국내산 원자재등의 우선 획득과 관련된 사항

2. 외국산 원자재등의 사용으로 인한 정보 유출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원자재등의 사용 방지 대책 및 보안·취급·관리 대책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1조의6(중전의 제61조의2)제1항 본문 중 “법 제46조제5항”을 “법 제46조제7항”으로 하고, 제61조의7부터 제61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7(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 또

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방위사업계약(구매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잔여 이행기간이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청구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의 잔여 이행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착수금 및 중도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지급하되, 착수금과 중도금을 합한 지급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위사업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착수금 및 중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위사업계약상

대자에게 착수금 및 중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해당 방위사업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법 제59조, 이 영 제7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방조달계약과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2. 국방조달계약과 관련하여 2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⑦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1.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착수금 및 중도금의 최대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을 뺀 금액을 전부 지급

2.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착수금 및 중도금의 최대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급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착수금 및 중도금의 구체적 지급·반환기준 및 차등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8(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이하 “핵심기술등”이라 한다)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 핵심기술등의 종류, 적용 여부 또는 활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핵심기술등의 적용에 대한 가점 부여 여부 및 그 기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1조의9(지체상금의 부과 등) ① 법 제46조의4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

은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율(率)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 지체상금의 총액은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을 위한 계약(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중 양산을 위한 계약은 방산물자에 한정한다)
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계약

④ 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24년 5월 1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2024년 5월 1일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종전의 방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계약: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⑤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계약보증금의 한도는 당초 계약보증금에 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체상금 부과 유보(留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1조의10(지체상금의 감면 등) ① 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사변, 비상재해, 감염병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2. 정부의 정책변경, 전산장애, 행정지연 등 정부의 책임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3. 주요 원자재나 부품 수출국의 전쟁, 국경폐쇄, 수출금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요 원자재나 부품의 수입이 지체된 경우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지체일에 대해 지체상금 전부 감면

2. 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지체일에 대해 지체상금의 100분의 30 이상 감면

3. 법 제46조의4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의 원인이 있는 하도급자 외에 적합한 하도급자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③ 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으려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지체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계약목적물의 성질·규모,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산정된 지체상금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지체상금의 감면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체상금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기술품질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상금의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도진성 및 성실도 등에 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 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기술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체상금 감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1조의11(계약의 변경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약(개산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

약의 규모 및 변경 사유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법 제46조의5제1호에 따른 계약의 변경 사유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계약내용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공정(工程)의 일정 변경
2. 물자(物資)의 성격 변경
3. 기술의 변경
4. 소요제기기관의 추가 요구사항 반영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법 제46조의5제2호의 사유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려는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 등을 거친 후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46조의5제2호의 사유로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장의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61조의10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1조의12(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① 방위사업계약의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에 각각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제4항 단서 및 이 영 제4조제10항에 따른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계속 이행 여부
2. 법 제46조의4제2항 및 이 영 제61조의10제4항·제5항에 따른 지체 상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의5 및 이 영 제61조의11제1항·제4항에 따른 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59조제1항 및 이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각각 지명하고,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 또

는 방위사업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방부·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각군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방위사업과 조달계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
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대
해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자료제출
요청 및 수당·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⑦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방위
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실무위
원회를 둘 수 있다.

⑧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는 2029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
회 및 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한행위의 유형, 고의·과실 여부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이 대표 및 임원인 다른 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공무원의 의제)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이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의3(방위사업계약의 범위)</u> ① <u>법 제3조제15호라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u> <u>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복구 또는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조달이 필요한 물품</u>가. 전시, 사변, 적의 침투나 국지도발(局地挑發)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u>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u> <u>다. 재난, 재해, 감염병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u> <u>2. 해외파병 관련 업무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조달이 필요한 물품</u> ② <u>법 제3조제15호마목에 따른</u>

<신 설>

제4조(청렴서약서의 제출 및 내용) <신 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전력지원체계 중 장병의 생명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우수한 성능과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2조의4(장기계약의 정의) 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계약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경우

2. 장기조달계획, 장기간 예측되는 반복소요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회계연도 내에 종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청렴서약서의 제출 및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제61조의12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

①국방부장관은 위원회 및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 등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방부장관이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가. 위원회

나.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정책분과위원회

다. 국방부에 두는 방위사업 계약심의위원회 및 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회

2. 방위사업청장이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나. 제15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

다. 방위사업청에 두는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및 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회

③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6

⑦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이하 “방위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방산업체등, 방위사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하며, 이하 “하도급자”라 한다)와 체결하려는 경우 또는 하도급자가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⑧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직위를 이용한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부당이익

항까지와 같음)

⑧ 국방조달계약-----

----- 국방조달계약

----- 국방조달계약-----

⑨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와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

<u>취득금지에 관한 사항</u> 2. <u>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u> <u>알선·청탁의 금지에 관한 사</u> <u>항</u> 3. <u>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u> <u>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u> <u>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u> <u>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u> <u>사항</u> 4. <u>불공정한 하도급의 금지에</u> <u>관한 사항</u>	<u>설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u> <u>항을 말한다.</u> 1. <u>방위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u> <u>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u> <u>는 정보</u> 가. <u>법 제13조제3항에 따른</u> <u>소요의 적절성 검증</u> 나. <u>법 제14조의2에 따른 사</u> <u>업타당성조사</u> 다. <u>법 제15조에 따른 소요결</u> <u>정</u> 라. <u>법 제15조의3에 따른 사</u> <u>전개념연구</u> 마. <u>법 제17조제1항 본문에</u> <u>따른 선행연구</u> 바. <u>법 제23조에 따른 분석·</u> <u>평가</u> 사. <u>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u> <u>지에 준하는 방위사업 추</u> <u>진에 관한 정보</u> 2. <u>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회 등</u> <u>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정</u> <u>보</u> 가. <u>위원회</u> 나. <u>법 제10조에 따른 분과위</u> <u>원회 및 실무위원회</u>
---	--

<신 설>

제5조(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된

다.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및 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
회

3.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되거
나 계약이행의 결과로 도출된
주요 연구성과물에 관한 정보

⑩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
장은 법 제6조제4항 단서에 따
라 같은 조 제1항제4호 또는 제
5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방위사업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계약목적물의 성격

2. 부정행위의 경중

3.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및 기
간

4. 계약 이행의 시급성

5. 계약 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
가의 손실 규모

제5조(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법 제6조제5항-----

다.

② ~ ④ (생략)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옴부즈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이 제2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제1호·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후에 법 제6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밝혀지거나 법 제6조제8항 각 호의 직을 겸직하게 된 경우

제7조(민원조사 처리절차 등) ① 옴부즈만이 법 제6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때에는 옴부즈만 전원이 합의하여 대표옴부즈만이 한다.

② (생략)

③ 옴부즈만이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관계 서류의 원본을 받았을 때에는 받은 날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라 -----

-----.

제2호부터 제4호까지-----

-----.

1. ~ 5. (현행과 같음)

6. -----
법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법 제6조제9항 -----

제7조(민원조사 처리절차 등) ① ----- 법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② (현행과 같음)

③ ----- 법 제6조제8항-----

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11조(주요직위의 범위 및 자격 기준) ① (생략)

②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직위에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57조제1항 및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징계 처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주요직위에 임명될 수 없다.

1. ~ 3. (생략)

③ (생략)

제15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1. 2. (생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주요직위의 범위 및 자격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조에 따라 -----

-----.

-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에 따른 -----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0조에 따른 -----

-----.
다만,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5항 단서에 따른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제28조(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 등) ① 방위사업청장 및 소요와 관련된 군, 국방부 직할기관[이하 “소요군(所要軍)”이라 한다]은 무기체계가 획득되어 배치됨과 동시에 운용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요소(이하 “전력화지원요소”라 한다)를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제1호가목 및 제2호의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해야 하며, 소요군은 제1호 나목의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해야 한다.

1. 획득된 무기체계가 전장에서 즉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전투발전지원요소

가. 부대시설, 무기체계의 상 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나. 군사교리(軍事敎理), 부대 편성을 위한 조직·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

2. 획득된 무기체계를 전체 수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 등) ① 방위사업청장과 소요와 관련된 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이하 “소요군(所要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해야 한다.

1. 방위사업청장: 법 제3조제13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소요군: 법 제3조제13호가목 2)

명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
리하는 데 필요한 수리부속품
및 사용설명서 등의 통합체계
지원요소(무기체계를 획득하
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

② ~ ④ (생 략)

제29조(조달방법 등) ① (생 략)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군이 군수품을 직접 조달(이
하 “부대조달”이라 한다)할 수
있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 4. (생 략)

5. 전시·사변 등으로 긴급한
구매가 필요한 품목

6. ~ 8. (생 략)

③ ~ ⑥ (생 략)

제50조(방산업체의 보호육성) ①
~ ③ (생 략)

④ 방위사업청장이 제60조제1
항에 따라 장기계약을 체결하려
는 경우에는 연도별 방산물자의
생산계획물량을 해당 방산업체
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방산업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조달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3조제15호라목에 따른
물품

6. ~ 8.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0조(방산업체의 보호육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장기계약 ---

체는 조달계약 체결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원자재 및 부품을 확보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60조(장기계약)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계약(이하 “장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하거나,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물자를 조달하는 경우로서 그 계약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때

2. 장기조달계획, 장기간 예측되는 반복소요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에 당해 회계연도 이내에 종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판단되는 때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⑤·⑥ (현행과 같음)

제60조(장기계약의 체결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장기계약에 입찰하려는 자가 총제조 또는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은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부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제조금액 또는 총용역금액으로서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계약금액을 연차별로 배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차별 배분금액”이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이행기간 동안 계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 제37조제1항 · 제50조제3항 및 제69조의 규정은 방산물자를 장기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기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계약의 종류 · 내용 및 방법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계약의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방산업체와 방산물자 생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해당 연도의 예산을 고려하여 매년 연차별 배분금액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연차별 배분금액을 누적하여 부기해야 한다.

④ 장기계약의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5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계약의 종류 · 내용 및 방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방산업체와 방산물자 생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생산을 말한다)·구매계약(해당 방산업체가 제조하지 않는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리부속품의 생산·구매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1의2. ~ 4. (생략)

5. 적의 침투·도발 등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물자를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6.·7. (생략)

8. 수입한 수리부속품 중 해외정비가 불가능한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을 갖춘 것으로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국내업체와 정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에 따른 생산을 말한다)·구매계약[해당 방산업체가 제조하지 않는 법 제3조제13호나목에 따른 수리부속품(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생산·구매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1의2.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3조제15호라목의 물품과 관련하여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7. (현행과 같음)

8. 국내 수리원(修理員)이 존재하지 않아 국내정비능력을 개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장비, 구성품 또는 결합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능력을 개발한 국내업체와 장비, 구성품 또는 결합체의 정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위사업계약의 구체적 내용, 범위 및 체결 등에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제품생산(합정 및 전장정보관리체계 등 무기체계의 특성상 시제품 자체가 전력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게 하는 계약

2.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법 제34조에 따라 방산물자로 지정된 물자를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양산하게 하는 계약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계약보증금의 한도는 당초 계약보증금에 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61조의2(성능 등 중심의 낙찰자

결정)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성능 또는 품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거나 우선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성능 또는 품질에 대한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가 그 평가기준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낙찰자 결정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1조의3(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신 설>

및 방법) ①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국외구매를 위한 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제61조의4, 제61조의5 및 제61조의7부터 제61조의9까지에서 같다)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의 세부 기준 및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4(개산계약의 정산 등)

①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개산가격의 결정, 개

산계약의 체결 절차 및 정산기준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개산가격의 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견적가격

2. 유사한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원가계산을 통해 계산한 가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산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추가로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정산하는 금액은 입찰공고 당시 해당 사업의 예산과 최초 계약금액 간의 차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경쟁입찰로 체결한 경우

<신 설>

2.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산 시점에 산정한 원가가 정산 시점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이 반영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산계약의 체결기준, 계약금액의 조정 및 개산계약의 세부적인 정산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5(국내산 원자재 등의 우선 획득)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원자재등”이라 한다)이 우선 획득될 수 있도록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 평가항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제61조의2(군수품 선택계약) ①
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하 “군수품 선택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군수품 선택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추어야

1. 국내산 원자재등의 우선 획득과 관련된 사항

2. 외국산 원자재등의 사용으로
인한 정보 유출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원자재
등의 사용 방지 대책 및 보안
· 취급 · 관리 대책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1조의6(군수품 선택계약) ①
법 제46조제7항-----

한다.

②·③ (생략)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제61조의7(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방위사업계약(구매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잔여 이행기간이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청구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의 잔여 이행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착수금 및 중도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지급하되, 착수금과 중도금을 합한 지급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

업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위사업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착수금 및 중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은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및 중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해당 방위사업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법 제59조, 이 영 제7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은 법 제46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방조달계약과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2. 국방조달계약과 관련하여 2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⑦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

장은 법 제46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1.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착수금 및 중도금의 최대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을 뺀 금액을 전부 지급

2.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착수금 및 중도금의 최대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급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착수금 및 중도금의 구체적 지급·반환기준 및 차등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

<신 설>

다.

제61조의8(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이하 “핵심기술등”이라 한다)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 핵심기술등의 종류, 적용 여부 또는 활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핵심기술등의 적용에 대한 가점 부여 여부 및 그 기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신 설>

다.

제61조의9(지체상금의 부과 등)

① 법 제46조의4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율(率)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 지체상금의 총액은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을 위한
계약(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중
양산을 위한 계약은 방산물자
에 한정한다)

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계약

④ 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 총액
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24년 5월 1일 이후 계약기
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
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제2항
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
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
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2024년 5월 1일 전에 계약기
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
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종전의 방위사업법 시행
령(대통령령 제00000호로

<신 설>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계약: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⑤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계약보증금의 한도는 당초 계약보증금에 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체상금 부과 의 유보(留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1조의10(지체상금의 감면 등)

① 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사변, 비상재해, 감염병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2. 정부의 정책변경, 전산장애, 행정지연 등 정부의 책임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3. 주요 원자재나 부품 수출국의 전쟁, 국경폐쇄, 수출금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요 원자재나 부품의 수입이 지체된 경우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지체일에 대해 지체상금 전부 감면

2. 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지체일에 대해 지체상금의 100분의 30 이상 감면

3. 법 제46조의4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의 원인이 있는 하도급자 외에 적합한 하도급자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③ 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으려는 방위사업계약상 대자는 계약이행 지체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계약목적물의 성질·규모,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산정된 지체상금을 방위사업계약상 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지체상금의 감면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법 제46조의4 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체상금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기술품질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상금의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도전성 및 성실도 등에 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 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기술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신 설>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체상금 감면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1조의11(계약의 변경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약(개산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규모 및 변경 사유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법 제46조의5제1호에 따른 계약의 변경 사유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계약내용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공정(工程)의 일정 변경

2. 물자(物資)의 성격 변경

3. 기술의 변경

4. 소요제기기관의 추가 요구사항 반영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법 제46조의5제2호의 사유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려는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 등을 거친 후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46조의5제2호의 사유로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

<신 설>

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방
기술품질원장의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61조의10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계약 변경의 구
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1조의12(방위사업계약심의위
원회) ① 방위사업계약의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
에 각각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
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제4항 단서 및 이 영
제4조제10항에 따른 입찰·낙
찰 또는 계약의 계속 이행 여
부

2. 법 제46조의4제2항 및 이 영
제61조의10제4항·제5항에 따
른 지체상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의5 및 이 영 제61

조의11제1항·제4항에 따른
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59조제1항 및 이 영 제
7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
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
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계약심
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계약심의위
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각각 지명
하고,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
업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국방부·방위사업청·합동참
모본부·각군의 과장급 이상
의 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
는 사람

2. 방위사업과 조달계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대해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자료제출요청 및 수당·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⑦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1. (생략)
<신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3. <u>사업자등록증</u> ③·④ (생략) <u>제70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u>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 및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이 청렴서약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위반 사실과 관련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방위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입찰, 낙찰 또는 계약체결·이행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금품·향응 등을 주기로 약속하거나 준 사실이 있는 경우 2. 방위사업과 관련된 특정정보	<u>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u>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u>제70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u>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한행위의 유형, 고의·과실 여부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이 대표 및 임원인 다른 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	---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4. 방위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면서 원도급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②청렴서약의 위반을 이유로 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의2(공무원의 의제)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이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

<u>회의 위원 및 방위사업계약실무 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전력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5613